화성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3. 17. (엄정룡 의원 등 5명)

나. 회 부 일 자 : 2022. 3. 18.

다. 상 정 일 자 : 제21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2022. 3. 31. 원안가결)

2. 제안요지설명 (엄정룡 의원)

가. 제안사유

1)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화성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화성시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들에 대해 규정함 (안 제5조)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기여한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이강석 전문위원)

가. 본 안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가 점점 다양화, 지능화 되면서 시민의 재산에 손실을 끼치는 일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발의된 조례안으로,

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시장의 책무, 피해예방 사업,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여, 그동안 경찰 중심의 피해예방 활동에서 관련기관의 협력 및 공동 대응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시민들의 금융안전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됨.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재단법인 화성시환경재단 사무실 사용료 감면 동의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3. 17. (화성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2. 3. 18.

다. 상　　정　　일　　자 : 제21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2022. 3. 31. 원안가결)

2. 제안요지설명 (조윤호 환경행정팀장)

가. 제안사유

1)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2020. 12. 1. 설립하여 운영중인 재단법인 화성시환경재단은 우리 시 100% 출연기관으로 환경백서, 기후변화대응계획 연구를 통해 환경정책사업과 비봉습지, 반석산에코스쿨 운영을 통해 환경교육 활성화에 힘쓰고 있음

2) 독립된 재단으로 운영중인 환경재단은 현재 관련규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에 따라 사무실 사용료 감면을 위해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사용위치 : 화성시 향남읍 향남로 470, 화성종합경기타운 1층

2) 용　　도 : 재단법인 화성시환경재단 사무실 이용

3) 전용면적 : 256.39㎡

4) 감면비율 : 100% 감면(무상 사용)

5) 감면기간 : 2022. 4. ~ 2027. 3. (5년)

6)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가) 2022. 3. : 2022년 제3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나) 2022. 4. : 제21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의결

다) 2022. 4. : 사무실 사용료 감면 통보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이강석 전문위원)

가. 본 동의안은 2020년 12월 설립되어, 화성종합경기타운 내 일부공간을 이용 중인 화성시환경재단의 사무실 사용료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감면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약256㎡(제곱미터)의 사무공간을 5년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임.

나. 본 동의를 통한 화성시환경재단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운영으로 화성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도시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됨.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시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3. 17. (공영애 의원)

나. 회 부 일 자 : 2022. 3. 18.

다. 상 정 일 자 : 제21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2022. 3. 31. 원안가결)

2. 제안요지설명 (공영애 의원)

가. 제안사유

1)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 및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여 화성시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1)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2)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포상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이강석 전문위원)

가. 본 안건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관리인식 또는 제도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약물 오남용을 막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나. 조례 제정을 통해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에 대한 올바른 사용 방법, 처리방법 등을 명문화하여 시민 의식을 계도하고 폐의약품에 대한 배출, 수집, 운반, 처리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하수도나 생활쓰레기로 배출되는 약품을 억제하고 환경보존 및 시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됨.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그린환경센터 소각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3. 17. (화성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2. 3. 18.

다. 상　　정　　일　　자 : 제21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2022. 3. 31. 원안가결)

2. 제안요지설명 (정승현 자원순환과장)

가. 제안사유

1) 화성그린환경센터 소각시설 민간위탁이 2022년 11월 4일로 계약이 종료되므로 소각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전문성 확보,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에 따라 화성그린환경센터 소각시설의 운영·관리를 민간위탁 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위탁시설 개요

가) 시 설 명: 화성그린환경센터 소각시설

나) 위　　치: 화성시 봉담읍 하가등안길 100

다) 시설내용: 소각시설(300톤/일(150톤/일×소각로2기))

라) 소각방식: 열분해가스화용융 방식

마) 운영예산: 11,325,938천원/년

2) 위탁사무

가)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 환경기초시설의 운영

나) 소각시설(화성그린환경센터)의 운영·관리

다) 소각시설 운영에 따른 민원해소 및 시설홍보, 건축물 관리 등

3) 민간위탁 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2년(2022. 11. 5. ~ 2024. 11. 4.)

4) 수탁자 선정방식

가)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적격자 선정

5) 수탁자 신청 자격

가)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나)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서 폐기물의 광역처리를 위하여 설립된 조합

다) 해당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그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4의 기준(기술인력 보유)에 맞는 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이강석 전문위원)

가. 본 안건은 화성그린환경센터 소각시설의 민간위탁 계약 기간이 2022년 11월에 종료됨에 따라,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소각시설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민간위탁 기간은 2022년 11월부터 2년간임.

나. 환경에 대한 관심과 폐기물의 증가로 인해, 소각시설의 원활한 운영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소각시설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이는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처리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됨.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동탄2 크린에너지센터(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3. 17. (화성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2. 3. 18.

다. 상 정 일 자 : 제21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2022. 3. 31. 원안가결)

2. 제안요지설명 (정승현 자원순환과장)

가. 제안사유

1)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인 크린에너지센터의 3년의 민간위탁 운영기간(2019. 10. 01. ~ 2022. 09. 30.)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확보,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탄2 크린에너지센터에 대한 운영·관리를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위탁시설 개요

가) 시 설 명: 화성동탄2 크린에너지센터

나) 위 치: 화성시 동탄면 동탄대로9길 76

다) 시설내용: 음식물처리시설(160톤/일) 및 부대시설

라) 처리방법: 건식사료화 + 음폐수 혐기성소화방식

마) 사 업 비: 5,623,108천원/년

2) 위탁사무

가) 크린에너지센터의 운전 및 유지보수, 부대시설 관리

나) 반입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처리(계량 및 성상확인 포함)

다) 혐기성 소화설비, 수질오염방지설비, 악취방지설비 등 운전 및 유지보수

라) 바이오가스 생산 및 유지보수

마) 음식물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민원해소

바) 건축물 관리 등

3) 위탁기간: 2022. 10. 01. ~ 2024. 09. 30. (2년)

4) 수탁자 선정방식

가) 화성시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의선정

-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9조 제2항에 따라 화성시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선정

5) 수탁자 신청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입찰 공고일 기준 10년 이내에 지자체의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1년이상 처리량 기준 연평균 100톤/일 이상 처리·운영한 실적이 있는 업체

다)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가능

- 공동이행방식으로 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구성원이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중복된 공동수급체 모두 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한다.
- 공동도급 계약 시 반드시 대표사를 명시해야 하며, 대표사는 과업수행의 모든 책임을 진다.
- 공동수급체는 입찰 전에 2개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 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써, 대표사는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비중이 크며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춘 업체이어야 한다.
-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 참여업체를 변경할 수 없으며 업체 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이강석 전문위원)

가. 본 안건은 동탄2지구에 위치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인 크린에너지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2년 9월에 종료됨에 따라, 이를 새롭게 민간위탁 하고자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나. 민간위탁 기간은 2022년 10월부터 2년간이며, 관내에서 발생한 음식물을 사료화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된 폐수와 악취를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전문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향남2지구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3. 17. (화성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2. 3. 18.

다. 상　　정　　일　　자 : 제21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2022. 3. 31. 원안가결)

2. 제안요지설명 (정승현 자원순환과장)

가. 제안사유

1) 화성향남2지구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022년 10월 16일로 만료됨에 따라 시설의 생산성(예산절감) 및 효율성(전문인력 활용)을 높이기 위하여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향남2지구 자동집하시설 운영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위탁시설 개요

가) 시 설 명 : 화성향남2지구 자동집하시설

나) 위　　치 : 화성시 향남읍 상신하길로 222

다) 시설용량 : 24.25톤/일(일반 : 10.0톤/일, 음식물 : 14.25톤/일)

라) 운영시설

- 집하시설 1개소(지상1층, 지하2층)
- 폐기물 이송관로 27.7km 운영
- 투입구 549개(일반 201개, 대형 116개, 음식물 232개)

마) 사 업 비: 1,187,898천원/년

2) 위탁사무

가) 시설의 운영 · 관리

나) 반입 폐기물의 관리 및 처리

다) 이송배관 운전

라) 관계 법규에 규정된 업무

마) 자동집하시설 설치지역 주민 홍보 및 민원 응대

바) 투입구 주변 적정관리

사) 집하된 폐기물 중 이물질 선별

아) 기타 자동집하시설의 운영·관리 및 수송에 관한 제반업무 등

3) 위탁기간

가) 계약체결일부터 2년(2022. 10. 17. ~ 2024. 10. 16.)

4) 수탁자 선정방식

가) 화성시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의선정

-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9조에 따라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선정

나) 수탁자와는 위탁 내용, 의무에 관한 사항 및 조례, 타 지역 사례를 참고하여 협약서 작성, 교환 예정

5) 수탁자 신청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1) ~ 2)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또는 기계설비공사업 또는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을 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국내에서 1년 이상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이송관로 10km이상) 1개소 이상 운영 실적이 있는 업체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이강석 전문위원)

가. 본 안건은 향남2지구에 위치한 자동집하시설의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022년 10월에 종료됨에 따라, 새롭게 민간 위탁하고자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기간은 2022년 10월부터 2년간임.

나. 향남2지구에 시범사업으로 설치된 자동집하시설은 총 549개의 투입시설, 27.7km의 배관, 집하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약12,000세대가 이용하고 있음. 시설의 전문적인 운영 및 관리와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민간 위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